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8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김도읍 · 인요한 · 백중헌
이헌승 · 조지연 · 구자근
권영진 · 박상웅 · 임종득
박정하 · 정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안 제7조).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

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3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2.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란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보호 교육의 추진 내용
3. 정보보호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
5.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6.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보보호 교육의 시행

제8조(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정보보호 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정보보호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

제12조(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

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 ① 정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

②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2. 정보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정보보호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4. 정보보호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 관련 사업

제14조(자격제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